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임원(비상임 이사·감사) 공개 모집 재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대상: 비상임 이사 4명, 비상임 감사 1명

모집대상		주요역할
직위	인원	
비상임이사	4명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주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비상임감사	1명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 · 원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 등

2. 임기 및 보수

직 위	임기	보수
비상임 이사·감사	· 임명일로부터 2년 ·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무보수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u>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지급</u>

3. 자격요건

□ 응시 자격요건(필수)

직 위	자격요건
공통(참고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서비스원법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비상임 이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전임 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비상임 감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

□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심사 기준)

직 위	구 분	직무수행요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12조, 심사기준)
비상임 이사·감사	복지분야와 조직·경영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경험	· 조직관리 및 경영, 감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 · 복지분야의 연구논문 및 학위 등에 의한 전문지식 또는 복지분야 시설운영(경영) 경험 등에 따른 전문성
	조직 화합 및 올바른 노사관계 지향성	· 노사관계 갈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능력 ·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 등 노조관리 경험 및 전문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협상능력
	비상임 임원으로서의 기본윤리 및 자질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윤리관과 바른 인품 ·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의지

[참고 1] 공통 자격요건(임원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서비스원법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4.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별지 4)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등 포함_근무처별) 각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논문(석,박사) 요약문(해당자만) 1부(별지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지 6)
- 기타 연구실적(해당자만) 1부

※ 소정양식은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jeju.pass.or.kr>)에서 다운

-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 추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시 허위 또는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임용취소 됨
- ※ 서명은 자필서명으로 작성요망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9. 21(목) ~ 10. 4(수) / 14일간 *공고기간 동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제주사회서비스원 사무실
- ※-1.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2.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 응시자 심사(2023. 10. 5. ~ 10. 11. 예정)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2023. 10. 16. ~ 10. 17. 예정) :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진행

7. 기타사항

- 가. 비상임임원(이사, 감사) 직위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나. 모집일정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서류심사 합격 및 면접일정, 최종 합격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경영기획팀에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라.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마.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https://jeju.pass.or.kr>)에 공고됩니다.
- 바. 최종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070-4173-86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